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0.04.16.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0. 4. 6.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10. 4. 9.
- 다. 상정일자 : 제152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2010.04.16)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조 용 순 환경과장

가. 제안이유

각종 환경오염 및 생태계훼손행위를 방지하고 환경오염행위 감시에 주민의 건전한 참여를 유도하여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1) 환경오염행위 신고 적용범위 (안 제2조)
 - 마포구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 등을 행정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신고한 사항으로 정함.
- 2) 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 (안 제3조)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부 소관법률을 위반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환경오염행위 또는 환경훼손행위로 정함

3) 포상 (안 제6조)

- 신고내용이 조례에 따른 포상대상으로 확인되면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조례 별표1의 기준에 따른 포상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함
-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신고한 신고인에게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 별표1의 4호 기준에 따른 포상금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함.

4) 신고포상심사위원회 구성 (안 제7조)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업무 관련 소관국장이 되고 위원은 소관국 과장급으로, 간사는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업무 팀장으로 정함

5) 처리결과 통지 (안 제8조)

-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3. 검토보고 (김건재 전문위원)

0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른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절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한정된 행정인

력만으로는 각종 환경오염행위와 환경훼손행위를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주민들의 건전한 참여 유도 및 환경오염 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할 수 있음.

0 본 조례안 세부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에 “신고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부 소관 법률(이하 “환경관련법” 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환경오염행위 또는 환경훼손행위”로 규정하였으나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사목에 보면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약 및 원제(原劑)도 오염물질에 포함되며 「농약관리법」은 소관부서가 농림수산식품부로 환경부 소관 법률이 아니므로 안 제1조 및 안 제3조제1항 일부 조문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환경부예규 제397호('09.10.20)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 금제도 운영지침”에 지방자치단체는 대기, 수질, 폐기물 등 지자체 관할 사업장에 대한 신고사항 뿐 아니라 관할 행정구역 내에서 발생한 신고사항으로 유역(지방)환경청, 검찰, 경찰 등으로부터 포상금 지급을 의뢰 받은 사항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환경오염 행위는 물론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하였는바, 안 제6조제1항 관련, 별표에 징역형, 벌금형의 포상기준을 신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안 제6조제1항 중 “구청장은 신고내용이 이 조례에 따른 포상대상으로 확인되면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포상금 또는 상품권(이하 “포상금” 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고 규정하

였으나 이하 조항에 다른 별표가 없으므로 “별표 1”을 “별표”로, 안 제6조제3항 중 “별표 1”을 “별표”로 각각 수정을 요함.

안 제7조제1항 중 “신고포상심사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고포상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회 위원을 소관국 과장급으로 규정하였으나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타 부서도 있으므로 소관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같은 항 제4호 중 “신고포상업무 팀장”은 “신고포상업무 담당 팀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별표 1의 제2호에서 “배출부과금·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신고의 포상기준”의 지급율은 “부과되는 배출부과금·과징금의 징수교부금의 10퍼센트”로 규정하였으나 환경부 예규인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지침”의 지급율 기준에 “부과되는 배출부과금·과징금 등 부과액의 10퍼센트”로 되어 있는바, 동 조례안의 지급율은 상급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및 통일성 등을 감안하여 환경부 지침에 따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별표1의 제5호나목 중 “상금”은 안 제6조제1항에서 포상금 또는 상품권은 “포상금”으로 약칭을 사용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를 “포상금”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